
장애인 등록 시 장애유형별 필요 서류 안내

- 뇌병변장애 -

2020. 01

본 자료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각종 서식을 재구성한 자료입니다. 장애인 등록을 위해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

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

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·신경외과·신경과 전문의

장애진단 시 필요한 구비서류

구 분	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	비 고
뇌출혈, 뇌경색 등 뇌병변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이학적 검사소견, 수정바텔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	뇌병변 추가발생이나 악화조건이 없는 경우 기존 촬영된 영상 제출 가능(추가 촬영 불필요)
	소견서	뇌병변장애용 소견서 (근력등급, 수정바텔지수, 근경직 등 기재)	
	검사결과지	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(뇌경색, 뇌손상), CT(뇌출혈) 등 뇌영상 자료	
	진료기록지	발병당시 주요 경과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(원인상병, 치료경과, 장애상태 등 확인용,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, 입퇴원요약지)	기존 심사역력이 있는 경우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
뇌성마비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텔 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※ 의사가 수정바텔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 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	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 시 진료기록지 제출 (추후 장애상태 확인 위해 자료 보완, 직접진단 등 요청할 수 있음)
	소견서	뇌병변장애용 소견서 (근력등급, 수정바텔지수, 근경직 등 기재)	
	검사결과지	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 하지 않으며,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	
	진료기록지	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(원인상병, 치료경과,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)	
파킨슨병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, 약복용 종류·기간, 약 복용 전·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	기존 심사역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(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)
	소견서	뇌병변장애용 소견서 (치료경과 및 치료반응, 수정바텔지수, 호엔야 척도 등 기재)	
	검사결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✦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(파킨슨병 진행 단계검사) ✦ 파킨슨병척도 검사(UPDRS) : 보유시 제출 	
	진료기록지	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-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(진단명, 치료기간 및 경과, 최근의 중증정도·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·장애정도 등 확인용) ※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	

<장애심사서류 완화>

-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: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**2년 이내**에 읍·면·동에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. (뇌병변장애용 소견서 별도 제출 필요)
 - * 장애정도를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.
- 검사결과지
 - 진료기록 등에 **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**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 (CT, MRI 등)를 활용
 - **기존 등록장애인이**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,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정도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,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. 다만,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, MRI를 촬영
- 진료기록지 : 파킨슨병 외에는 **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** 진료 기록지 대신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(**파킨슨병은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없음**)

